

#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 690

제출년월일 : 2001. 3. 15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폐지이유

-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없고 신규채용도 없어 불필요한 규제 정비대상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-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의 폐지

## 3. 본 문

고성군 조례 제 호

#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